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5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2월 27일  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경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비롯한 교육청소속 당연직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함(안 제4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위원장과” 를 “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” 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<u>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	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<u>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	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<u>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성별영향평가책임관)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며,” 를 “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정책·안전기획관, 예산담당관, 교육혁신과장” 을 “성별영향평가책임관, 정책기획관, 예산담당관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 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며,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: 정책·안전기획 관, 예산담당관, 교육혁신과장, 성 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④ (생 략)</p>	<p><u>제3조의2(성별영향평가책임관) 성 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----- -----.</u>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-----: <u>성별영향평가책임 관, 정책기획관, 예산담당관, ----- -----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